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Review o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745)

김동윤(Dong-yoon Kim)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강사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시사점 및 결론 |
| II. ISBP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 참고문헌 |
| III.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 Abstract |

국문초록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2013 개정 국제표준은행관행,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ICC 은행위원회

I. 서론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의 대금지급확약은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의 제시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준거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UCP 600을 기반으로 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최초 서류제시에서 거절되는 불일치 비율이 60%를 상회한다고 ICC은행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즉,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에 대한 해석기준이 UCP 규정만으로는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신용장거래 당사자가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상충된 주장을 해결하고 신용장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C은행기술실무 위원회는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¹⁾의 도입하여 서류심사 기준의 모호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보다 원활히 신용장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표준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ISBP가 도입되기 이전의 경우 신용장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의문점에 대하여 각 은행들은 UCP에서 해결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만약 해결할 수 없는 경우 ICC은행위원회에 질의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2년 6개월간의 작업을 통하여 2002년 10월 로마 총회에서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ISBP가 승인되었다. ISBP가 공표된 2002년 이후 11년간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인수거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ISBP는 최초 2002년 ISBP 645로 공표되었으며 2007년 UCP 600으로 개정됨에 따라 함께 ISBP 681로 개정되었으며, 2013년 ISBP 745로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ISBP 745는 신용장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준거규정이라 할 수 있는 UCP600과 ICC은행위원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반영되지 못한 내용을

1)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645, ICC Publishing S.A., 2003. p. 8.

2) ISBP 745, Introduction, p.9.

ISBP를 통하여 부가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였다. ISBP는 강행규칙이 아니고 UCP 600의 주석(explanatory notes)형식의 추록(supplement)³⁾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시서류의 발행, 서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논의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ISBP는 신용장거래의 서류심사에 있어서 UCP 600과 함께 은행이나 법률가 및 무역업자 등 거래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용장 관행으로 이에 대한 이해 및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ISBP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ISBP 645, ISBP 681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환어음과 운송서류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⁴⁾, 이번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2년 4차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박세운·한기문 교수의 연구와 2013년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원칙과 환어음을 중심으로 한 박세운 교수의 연구가 있다.⁵⁾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내용에서는 2013년 ICC 은행위원회가 개정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ISBP 745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ISBP 745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ISBP 745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UCP 600에 따른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ISBP 745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기존 ISBP 681에서 수정되거나 새로 반영되어 업데이트된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UCP 600의 추록인 “ISBP Publication No. 745”에 반영된 주요논의 사항, 일반원칙,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및 기타서류 등과 같은 항목⁶⁾에 대한 기본 구성내용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ISBP 745, UCP 600 관련조항 및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3) Roberto bergami,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anacea or Confusion?”,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Vol. 8, p. 280.

4) 강원진, “2007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반영된 업데이트 내용의 검토”, 『한국무역상무학회지』,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5, pp.97~212. 이상훈,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운송서류 관련조항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5. 8, pp.179~201, 박석재, “항공운송서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 2007. 4, pp.209~232 등.

5) 박세운·한기문, “ISBP 주요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12. 12. pp.247~267, 박세운, “ISBP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13. 6, pp.131~150.

6) ISBP 745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Introduction, Preliminary considerations, Drafts and Calculation of maturity date, Invoic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Bill of lading, Non-negotiable sea waybill,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Air transport document,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Certificate of origin, Packing list, Weight list, Beneficiary’s certificate, 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Quality and other certificates.

II. ISBP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양분되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제시서류나 서류심사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CC은행위원회는 UCP 500을 개정하면서 서류심사기준을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는 개념을 처음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규정이나 문헌 없이 단지 언급만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류심사에 있어 발생하는 모호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서류심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 방안으로 2002년 ICC가 200개 항의 ISBP를 제시하여 UCP 규정과 함께 서류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서류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ISBP 645는 UCP 500의 보충적인 성격으로 ICC 최초의 공식적인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대한 해석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후 2007년 UCP 600으로 개정되면서 ISBP 681로 업데이트 되어 그 동안 은행실무에 적용되어 오면서 신용장 사용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의 변화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2010년 ICC 은행위원회의 개정 승인 이후 2012년 제5차 초안을 발표하고 2013년 3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현재 ISBP 745를 시행하고 있다.

ISBP 745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⁸⁾

첫째, ISBP는 기존의 버전과 동일하게 UCP 600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UCP 600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ISBP의 구성은 크게 예비적 고려사항, 일반원칙,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기타서류 등으로 주로 서류와 관련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기존 ISBP 681은 총 18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ISBP 745에서는 주요 논의 대상을 항목별로 A~Q로 구분하여 각 항목 내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하고 있다.

넷째, ISBP 745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 관계당사자들이

7) 미국은 이미 1920년 수출상업신용장 규약(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에서 은행표준관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1995년 개정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신용장발행인은 금융기관의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e)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관습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해석에 따르는 문제로 본다”고 하여 UCP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UCC) Article5-108(e).

8) Ron Kats, *op. cit.*, p. 2.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ISBP 745는 기존의 ISBP와 마찬가지로 UCP 600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UCP 600과 관련 된 관행이 서류취급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ISBP와 UCP는 각각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UCP 600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⁹⁾ 물론, 일부 국가의 법은 ISBP에 언급된 것과 다른 관행을 강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¹⁰⁾

Ⅲ.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1. ISBP의 주요 구성항목의 변화

2013년 개정 ISBP 745는 UCP 600과 함께 적용되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은 서문(introduction), 예비적 고려사항(preliminary considerations)에서 개정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ISBP 681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인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과 환어음(drafts), 송장(invoice), 각종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중량명세서(weight list)등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SBP 745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롭게 반영된 일부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변화가 있다. 기존 ISBP 681과 ISBP 745의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SBP 681과 ISBP745의 구성변화〉

ISBP 681		ISBP 745	
예비적 고려사항	ISBP 1~5	예비적 고려사항	i~vii
일반원칙	ISBP 6~42,	일반원칙	A1~41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ISBP 43~56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B1~18
송장	ISBP 57~67	송장	C1~15

9) 바레인의 화환신용장 전문가인 Paul De Vos은 UCP를 규칙 및 절차로 간주하고 ISBP를 최선의 관행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M. Ford, "What traders expect from the new UCP", DCINSIGHT, Vol.11, No.1, 2005. 1/3, p. 23. 반면 일부 은행들은 ISBP를 UCP의 명확화의 수단이 아닌 UCP에 반대되는 규칙으로서 오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137면.

10)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1, ICC Publishing S.A., 2007, Introduction.

ISBP 681		ISBP 745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ISBP 68~90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D1~32	
선화증권	ISBP 91~114	선화증권	E1~28	
용선계약 선화증권	ISBP115~133	신설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F1~25	
항공운송서류	ISBP 134~156	용선계약 선화증권	G1~27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ISBP 157~169	항공운송서류	H1~27	
보험서류	ISBP170~180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J1~20	
원산지증명서	ISBP 181~185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	K1~23	
		원산지증명서	L1~8	
		신설	포장명세서	M1~6,
			중량명세서	N1~6
			수익자증명서	P1~4
			기타서류 (검역, 수량, 품질 등)	Q1~11

ISBP 681에서 구성되었던 185개 세부항목과 비교할 때 ISBP 745의 경우 각 항목별로 더욱 구체화하여 구분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존 ISBP 681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수익자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관하여 서류의 발행자에 대한 설명과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이번 개정과정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ISBP 681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예비적 고려사항과 일반원칙의 주요내용

예비적 고려사항과 일반원칙은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비적 고려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UCP와 함께 ISBP 745를 적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과정에서 신용장 발행 및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주의를 한다면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ISBP 745에서 예비적 고려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 적용범위와 신용장발행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¹⁾ 예비적 고려사항에서 ISBP의 적용범위는 ISBP 681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ISBP는 독자적으로 서

11) ISBP 745 예비적 고려사항(Preliminary considerations)은 적용범위와 신용장 발행 및 조건변경에서 당사자들의 주의 사항(모호한 지시에 의한 발행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7개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류심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UCP 600과 함께 사용된다는 점을 이번 개정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¹²⁾

신용장 발행 및 조건변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용장발행이나 조건변경 과정에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서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즉, 신용장 발행의뢰인, 수익자가 신용장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행의뢰인이 신용장발행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모호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ISBP 745에서 주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규정인 송장, 운송서류 및 기타서류에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면 UCP 600 제20조 c항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금지된다는 설명을 덧붙여 하고 있다.¹⁴⁾

3. 일반원칙과 관련한 주요 내용

일반원칙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약어, 증명서 및 선언서,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사본의 내용, 수정된 정보에 대한 인증, 서류의 발송에 사용된 특송 및 우편영수증, UCP 600에서 규정하지 않은 운송서류, UCP에서 정의되지 않은 표현, 서류의 발행자, 언어, 산술적 계산, 오타자, 비서류적 조건, 원본 및 사본, 확인, 서명, 복수 기능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⁵⁾

1) 약어, 증명서와 선언서

약어와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으로는 단어의 축약, 사선기호의 사용 및 쉼표의 사용이다. 단어의 축약은 ISBP 681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사선기호의 사용과 쉼표의 사용은 두 가지 모두 단어 대신 사용하는 경우 그 본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선기호가 사용되었고 문맥상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선택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¹⁶⁾ 즉, 사선기호("/")와 쉼표(",")는 단어 대신 사용하는 경우 다

12) ISBP 745, Scope of the publication i. p.13

13) ISBP 745, The Credit and amendment application, the issuance of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hereto. iv. p.13

14) ISBP 745, The Credit and amendment application, the issuance of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hereto. vi; For example, a credit requiring presentation of a bill of lading and containing a prohibition against transhipment will, in ost cases have to exclude UCP 600 sub-article 20(c) to make the prohibition against transhipment effective. p.14.

15) ISBP 745 General principles, pp15-28.

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선기호와 쉽표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선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¹⁷⁾

ISBP 745에서 증명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이다. 이는 증명서등의 서류에 일자와 관련한 요구가 있는 경우 서류상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장상에 선령이 25년 미만이어야 한다고 표시된 경우 선박 건조일자를 증명서에 기재하거나 선박연령이 25년 미만이라는 그와 일치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¹⁸⁾

2) 운송서류 사본에 나타나는 정보, 서류발송에 사용된 특송 영수증, 우편 영수증

신용장에서 운송서류와 관련하여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신용장에서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사본에 나타나는 정보는 그 서류 또는 기타 명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본의 제시가 요구되는 경우 UCP 600 서류심사기준에서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⁹⁾

서류의 발송에 사용된 특송 영수증 또는 우편영수증과 관련하여서는 서류 발송 또는 통지의 증빙으로 특송 또는 우편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UCP 600 제14조 f항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²⁰⁾

3) 일자 및 UCP 600에서 운송서류로 적용되지 않는 서류

일자와 관련해서는 환어음, 보험서류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일자가 관련되어 있다. ISBP 745에서 일자와 관련해서 환어음은 발행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보험서류의 경우 발행일이나 위험담보와 관련한 개시일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송서류에는 선적일 또는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발행일, 본선적재일, 선적일, 선적을 위해 수령한 일자, 발송, 수탁 등 선적과 동일한 표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²¹⁾

16) ISBP 745, A2. a), p.15

17) 사선기호와 쉽표의 예로 “Red/Black/Blue”, “Hamburg, Rotterdam, Antwerp”로 사용되는 경우, 이 중 한가지만을 의미하거나 세가지의 가능한 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ISBP 745, A2, a),b). p.15

18) ISBP 745, A4, p.16.

19) UCP 600 Article 14(f), ISBP 745, A6. p.15.

20) ISBP 745, A10, p.18.

21) ISBP 745, A11, p.19.

UCP 600에서 운송서류로 적용되지 않는 서류 즉, 인도증서, 인도지시서, 화물수령증, 운송주선인의 수령증, 운송주선인의 선적증명서, 본선 수취증 등과 같은 서류는 UCP 600 제19조~25조에 해당하는 운송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행을 반영하여 ISBP 745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이 제시되고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UCP 600 제 14조 f항에 따라 서류의 정보가 상충되지 않고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UCP 600에서 정의되지 않은 표현, 서류의 언어, 산술적 계산 및 오탈자

ISBP 745에서는 UCP에서 정의되지 않은 일부 표현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²²⁾

UCP에서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 할 수 있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기한경과 서류 수리가능(stale documents acceptable)”, “제3자의 서류 수리가능(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운송회사(shipping company)”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토해 봐야할 사항으로 “제3자의 서류 수리가능”이라는 표현이다. ISBP 745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의미가 없으므로 무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선적인이 제3자인 경우 또는 서류의 발행자가 제3자인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서류심사 과정에서 혼돈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한다.²³⁾

서류의 언어와 관련하여 ISBP 745에서는 신용장에서 서류의 언어를 명시한 경우 신용장에 서 요구된 자료는 해당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미리 인쇄된 경우에는 요구된 언어와 다른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²⁴⁾

산술적 계산과 관련하여 만약 신용장에 산술적 계산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총액, 수량, 중량 등에 대하여 총액만 심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5) 비서류적 조건, 원본 및 사본서류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비서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SBP 745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²⁶⁾ 비서류적 조건이

22) ISBP 745, A19, Expressions not defined in UCP600; “shipping documents”, “stale documents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s not acceptable”, “exporting country”, “shipping company”, “documents acceptable as presented”등 UCP 600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의 예로 들고 있다.

23) ISBP 745, A19. p. 22.

24) ISBP 745, A21. p.23.

25) ISBP 745, A22. p.24

26) ISBP 745, A26,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conflict of data. p.25.

라 함은 신용장에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SBP 745 내용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신용장에 “packing in wooden cases”라는 조건이 명시되었으나 어떠한 서류에도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이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여 무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본 및 사본서류와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상업송장의 사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사본의 제시와 원본의 처분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 원본이 제시되면 하자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²⁷⁾

4. 환어음 및 만기일의 계산

환어음 및 만기일(draft and maturity date)에 관하여 ISBP는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만기일, 은행영업일, 발행, 서명, 금액, 배서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⁸⁾ 환어음과 관련한 기본요건으로 은행은 ISBP 745 B2~B17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환어음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어음지급기한과 관련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어음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BP 745에서는 어음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일람지급, 일람 후 지급, 확정일자 지급과 관련한 설명 중 선화증권 일자로부터 60일 이후 지급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²⁹⁾

즉 지급기일 중 “부터(from)” 및 “이후(after)”라는 단어가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from” 및 “after”라는 단어는 언급된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어음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한 “from”과 “after”의 서류, 선적 또는 다른 행위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5월 4일 이후 또는 5월 4일부터 10일은 5월 11일이 된다.³⁰⁾

이와 관련하여 ISBP는 과거의 유권해석에서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류가 매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신용장에서 21일의 기산에 있어서 선화증권 발행일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³¹⁾에 대하여 UCP에는 “from”이 선적일자 이외에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from”이라는 용어는 당해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7) ISBP 745, A30. p.26

28) ISBP 745, B1~B18. pp.29~33.

29) 이러한 형태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14 May 2013”, “60 days after 14 May 2013”, “60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bill of lading date 14 May 2013”, “60 days date(on a draft dated the same day as the date of the bill of lading)”, “13 July 2013(60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

30) ISBP 745, B2, d). p.30

31) ICC Banking Commission Pub. No. 632, R.294.

만기일의 경우 일람후 정기출금의 만기일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일람후 정기출금에 서 거절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차후 권리포기를 한 경우 환어음 지급은행이 발행은행이나 다른 은행이나에 따라 만기일의 기산이 달라지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³²⁾ 즉 발행은행이 거절통지를 하고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를 발행은행이 수락한 일자가 5월 7일이라면 만기일의 기산은 5월 8일이 된다.³³⁾ 또한 발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환어음 지급인인 경우, 발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거절통지를 한 경우 발행은행의 서류수리통지 다음날이 만기일로 기산된다.

5. 운송서류와 관련한 주요 내용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에 관하여 ISBP는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비유통해상화물 운송장,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 그리고 항공 운송서류 및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³⁴⁾

1) 적어도 두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에 관하여 ISBP는 UCP 600 제19조의 내용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에서 선적지 또는 최종 목적지가 내륙의 장소로 설정된 경우 운송서류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UCP 600 제19조에 따라 서류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Multimodal”과 “Combined” 두 용어 모두 인정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³⁵⁾

복합운송서류는 UCP 600 제19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운송인 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 여부는 운송인의 성명이 기재되거나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하다.

환적 및 분할선적과 관련하여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복합운송서류가 동일한 운송수단과 경로를 이용한다면 수리 가능하다 또한, 신용장에서 무사고 본선적제 복합운송서류(clean on boar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하더라도 “무사고”라는 단어는 복합운송서류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삭제하였다.³⁶⁾ 이에 대하여 UCP 600 무

32) ISBP 745, B5.

33) 박세운, “ISBP 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9권 제3호, 2013년 6월, p.144.

34) ISBP 745, D1~J20. pp.38-85.

35) ISBP 745, D1, c, D2. p.38

36) ISBP 745, D24, p.44.

사고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 규정을 두어 신용장이 운송서류가 “무사고 본선선적”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일지라도 “무사고”라는 단어는 운송서류상에 나타낼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복합운송서류에서 운임의 표기와 관련하여 운임의 선·후불에 대한 표시는 나타낼 필요는 없으나 제시되는 다른 서류와 상충되는 정보를 나타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2) 선화증권,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및 용선계약 선화증권

신용장에서 항구간 선적을 담보하는 선화증권에 관해서는 UCP 600 제20조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서류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BP 745는 ISBP 681과 마찬가지로 UCP 600 제20조의 적용, 발행 및 서명, 본선선적부기, 적재항 및 양륙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선화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그리고 하나 이상의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된 물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구간 선적을 커버하는 운송서류”(covering a port-to-port shipment)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및 즉 “해상선적만을 커버하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 covering sea shipment only)제시를 요구한 경우 UCP 600 제2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이에 따르기 위하여 선화증권이 항구간 선적을 커버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지만 해상, 해양 또는 항구 간 또는 유사한 서류라는 용어의 사용을 요하지 않는다³⁹⁾고 규정하고 있다.

선적항과 관련된 사례⁴⁰⁾로 환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방콕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화증권에는 선적항이 싱가포르 기재되고 하단에 특별조항으로 수탁지는 방콕이고 선적항은 싱가포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은행위원회는 선화증권의 특별조항에 의거하여 선적항은 방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방콕으로 명시하였으나 제시된 선화증권은 선적항을 싱가포르 표기하였고 방콕은 선적항이 아닌 물품의 수탁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자이나 신용장에서 환적이 허용되어 있고 선화증권의 특별조항에서 별도의 선박에 의하여 방콕에서 선적되어 있음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선화증권은 방콕에서 선적하여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양륙항과 관련된 사례로 환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에서 양륙항을 A항으로 할 것을 요

37) UCP 600, Article 27; 이와 같은 취지는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 및 항공운송서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8) ISBP 745, D30, p.45.

39) ISBP 745, E2, p.47.

40) ICC Document 470/TA.335, July 28, 1999.

구하였으나 선화증권에는 B항이 양륙항으로, A항은 도착지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기타 표기란에 양륙항이 A항이며 B항에서 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에는 양륙항을 A항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륙항란에는 B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A항이 양륙항이라는 표기는 기타 표기란에 되어 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⁴¹⁾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과 관련하여 기존 ISBP 681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ISBP 745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항목을 두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선화증권과 같이 적용, 발행 및 서명, 본선선적부기, 적재항 및 양륙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선화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등⁴²⁾에 관하여 UCP 600 제21조를 따라 서류심사가 이루어진다.⁴³⁾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특성이 일부 특성을 제외하고 선화증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ISBP 745에서도 구성내용과 설명이 선화증권과 내용 및 설명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용선계약 선화증권에 관하여 ISBP 745은 UCP 600 제22조의 적용, 원본, 선화증권의 서명, 본선선적부기, 적재항 및 양륙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선화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⁴⁴⁾

ISBP 745의 용선계약 선화증권은 “신용장이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UCP 600 제2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UCP 600 제20조의 적용과 관련된 선화증권제시와 중복되는 혼란방지 및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적용 관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⁵⁾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기타 내용들은 조항의 형태가 변경된 것 이외에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와 도로·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관하여 ISBP 745는 H1~H27, J1~J20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운송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항공운송서류의 경우 UCP 600 제23조의 적용, 원본, 서명, 선적일, 발송일, 출발공항 및 목적공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항공운송서류,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41) ICC Document 470/TA.508, November 13, 2001.

42) ISBP 745, F1~F25, pp.56~64.

43) ISBP 745, F1, p.56.

44) ISBP 745, G1~G27, pp.65~73.

45) ISBP 745, G1, p.65..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서류와 관련하여 ISBP 745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되며, 서류가 실제의 운항일에 대한 별도의 부기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 선적일로 간주된다. 운항번호 및 운항일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서류 상에 나타나는 그 외의 정보는 선적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기존 ISBP 681 개정시 변화되었던 일부 규정 이외의 주요한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

도로·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에 관하여 ISBP 745은 UCP 600 제24조의 적용, 원본, 및 부분, 서명, 지시인 및 착화통지처,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와 관련하여 ISBP 681의 165항에서 설명하고 있던 “상충”(conflict)으로 대체되었던 의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항공운송서류와 마찬가지로 도로·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또한 ISBP 681에서 설명하고 있던 주요 내용이 그 구성에 대한 일부 위치변화만 있을 뿐 주의 깊게 고려해야할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기타서류 관련한 주요 내용

ISBP 745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류는 송장, 운송서류 이외에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수익자의 증명서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1)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

보험서류와 관련하여 ISBP 745는 UCP 600 제28조의 적용, 보험서류의 발행인, 담보 위험, 일자, 통화 및 금액, 피보험자 및 배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SBP 745에서는 기존의 ISBP 681과 동일하게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라는 제목으로 UCP 600 제28조의 제목과 일치하게 사용하고 있다.

“신용장이 보험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를 ISBP 745의 UCP 600 제28조 적용은 “신용장이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와 같은 보험서류를 요구한 경우”라고 하여 보험서류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서류의 발행인은 “보험회사, 보험업자,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에 의하도록 ISBP 745에서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는 UCP 600의 규정⁴⁷⁾과도 일치된다. ICC 은행위원회⁴⁸⁾에서도 서명이 “proxy”에 의하여 행하

46) ISBP 745, K2, p.86.

여진 것으로 명시된 보험서류는 수리된다는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ISBP 681에서부터 적용되어 이번 개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타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기존의 ISBP 681과 그 내용의 구성과 설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요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및 수익자의 증명서

이번 개정 내용에 새롭게 추가된 일부 내용이 기타서류 중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및 수익자 증명서와 관련한 부분이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존의 ISBP 745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기타 일부 서류의 내용이 추가되었다.⁴⁹⁾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원산지 증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SBP 745에서는 원산지와 관련하여 기본요건,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신용장에서 GSP와 같은 형식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신용장에서 수익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협회 등에서 수익자를 표시한 서류를 발행함으로써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⁵⁰⁾

포장명세서와 중량명세서의 구성내용으로는 서류의 발행자,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포장명세서와 중량명세서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은행은 포장명세서나 중량증명서를 심사하는 경우 기타 약정된 서류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단지 총 금액만을 검사할 뿐이지 총 수량, 중량, 용적 등과 같은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두고 있다.

수익자의 증명서는 신용장에서 만약 수익자의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환신용장에서 수익자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지만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서류가 수익자 발행하는 채무불이행 진술서와 같은 서류이다.

하지만 보증신용장거래의 경우 UCP 600의 규정과 ISBP를 적용시키는 것 보다 ISP98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ISBP 745에서 새롭게 반영한 수익자의

47) UCP 600, Article 28-a.

48)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ICC Publication No. 660, 2005, R.580.

49) ISBP 745, L1~L8 Certificate of origin, M1~M6 Packing list, N1~N6 Weight list, P1~P4 Beneficiary's certificate, pp.91-95

50) ISBP 745, L3. p.91.

증명서와 관련한 내용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와 중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거래상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서류에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IV. 시사점 및 결론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UCP 600이 적용됨과 동시에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현재 UCP 600과 ISBP 681이 약 6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각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SBP 745를 개정하여 거래당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SBP 745에서는 기존의 ISBP 681과 유사한 형태로 서문 외에 예비적 고려사항, 일반원칙,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롭게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및 수익자 증명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ISBP 745의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개정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장 등 몇 가지 서류에 대하여 새롭게 내용을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또한 UCP 600에 반영되어 있는 종전의 ISBP 681의 185항을 ISBP 745에서는 각 항목별로 A부터 Q로 구분하였다.

각 서류별로 항목을 구분·정리하여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UCP 600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해당 조항과 사용 용어나 형식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이는 ISBP 681에서 하였던 용어의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 항목별로 사례별 예를 들어 거래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⁵¹⁾

둘째, 송장과 관련하여 물품매매만이 아닌 서비스매매에도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송장에 기재되는 명세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ISBP 745에서 UCP 600의 운송서류 관련 규정(제19조-25조) 순서와 동일하게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인 복합운송서류, 해상선화증권,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선화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 및 내수로 운송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새롭게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과 관련하여

51) 가장대표적인 예로 일반원칙에서 “For example, a condition in a credit stating “Red/Black/Blue” with no further clarification will mean only Red or only Black or only Blue or any combination of them” 등과 같은 설명을 각 항목별로 하고 있다.

내용을 신설하여 추가하였다.

셋째, 환어음과 관련하여 만기일 계산의 경우 어음 만기일은 환어음 지급 은행에 서류가 제시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만기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타 규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 UCP와 ISBP를 기준으로 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되는 “from”이라는 용어의 해석 기준은 UCP 500의 규정⁵²⁾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⁵³⁾과 상치되었던 것을 UCP 600과 ISBP 681에서는 선적기간 결정의 경우 당해일자를 포함하고, 환어음 만기일 기산의 경우 당해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원화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용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선적기일이나 만기일의 계산이 아닌 기타의 것에 “from”이나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UCP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⁴⁾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선적기일 및 환어음 만기일이 아닌 “xxx의 발행일로부터(from the date of issuance of xxx)” 등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경우 “from”에 대한 해석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정은행의 환어음 인수와 관련하여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는데, 환거래 관계가 없는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⁵⁾ 따라서 향후 지정은행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의 경우 ISBP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UCP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서류의 발행자, 원본서류, 무사고 해상화물운송장, 운임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타 서류라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에서 특정 서류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함께 실무상에 빈번히 요구되는 서류인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의 반영이 이번 ISBP 745가 ISBP 68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내용에서도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한 해석기준 그리고 지정은행

52) UCP 500, Article 47-a.

53)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Publication. No. 632, 2003, R.294;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UCP에는 “from”이 선적일자 이외에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from”이라는 용어는 당해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여 이 용어와 관련된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54) James E. Byrne and Lee H. Davis, “New Rules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der UCP 600”, *UCC Law Journal*, Vol. 39, Winter 2007, III-4-a..

55) 박세운, “ISBP 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9권 제3호, 2013년 6월, p.144.

과의 관계 및 일반원칙 부분에서 은행은 산술적 계산과 관련하여 여전히 규정이 모호하게 반영되어 있다.⁵⁶⁾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전히 ICC 은행위원회에 질의를 통하거나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신용장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요구서류나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불일치 서류로 인한 대금지급 거절을 회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ISBP 745가 기존의 ISBP 681과 비교하였을 때 구성내용의 형식이나 일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서류심사에서 사용되는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⁵⁷⁾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 _____, “2007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반영된 업데이트 내용의 검토”, 『한국무역상무학회지』,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5.
- 서정두, “ISBP(신용상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이방식·박석재,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이상훈,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운송서류 관련조항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5, 8.

56) 산술적계산과 관련하여 ICC은행위원회는 제시서류에 총금액이 맞는 경우라 할지라도 평균이 틀리는 경우 불일치로 보고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CC opinion R.700/TA588rev.

57)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645, ICC Publishing S.A., 2003. p. 8;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169면.

-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 박석재, “항공운송서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 2007. 4, pp.209~232
- 박세운, “ISBP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13. 6, pp.131~150.
- _____.한기문, “ISBP 주요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12. 12. pp.247~267,
- Bergami Roberto,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anacea or Confusion?”,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rbitration, Vol. 8, 2004.
- Byrne James E. and Davis Lee H., “New Rules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der UCP 600”, UCC Law Journal, Vol. 39, Winter 2007.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 DOLE Richard F., Jr., “Applicant Ad Hoc Waiver of Discrepancies in the Documents Presented under Letters of Credit,” 2006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6.
- Erdemol Haluk,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DCInsight, Vol. 13, No. 3, 2007.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under UCP 500, ICC Publication No. 535.
- ICC, Examination of Documents, Waiver of Discrepancies and Notice under UCP 500 Doc.470/952 rev2.
-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2002.
-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ICC Publication No. 660, 2005.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1, ICC Publishing S.A., 2007.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ISBP), ICC Publication No. 681. 2007.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ISBP), ICC Publication No. 745. 2013.

Kats Ron ,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DCInsight, Vol. 13, No. 3, 2007.

Kreitman Roger, “UCP 600: The End in sight?,” Letter of Credit Law Developments. Prepared for
CBA Commercial & Financial Transactions Committee and Klein Carter H. Jenner &
Block LLP. 2006.

Nilson, Åke ,“What’s the latest on ICC rules for electronic trade”, DC Insight, Vol. 6 No. 1, No. 3.
Summer, Winter 2000.

Seng, S. C., “Implications and Impact of ISBP”, DCInsight. Vol.9, No.2, 2003.

ICC, <http://www.iccwbo.org/> Oct, 8, 2013

ABSTRACT**Review o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745)**

Dong-yoon Kim*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745,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745 has dealt with A-Q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icles of UCP 600 with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 updated version ISBP 745 involved aligning it with UCP 600, making certain technical adjustments in expression of words such as “in conflict” instead of “inconsistent”, etc. Despite the updated ISBP 745, there remains a question. Where the words “from” or “after” are used in regard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iod of shipment or the maturity date of drafts, there is no guidance from the UCP as to its meaning. The party concerned in credit transactions is also requir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ISBP 745 and the articles of UCP 600 in order to acquire the documents preparation and examinati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minimize discrepancies.

Key Words : ISBP 745, ISBP 681, UCP600

* Adjunct Instructor, Dept. of International Economics & Trade, Inj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